

낙농진흥회의 운영과 사업방향



이인형

낙농진흥회설립위원회 사무국장

1. 머리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으나 오늘 날과 같은 위기상황을 맞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여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기힘든 고비를 넘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낙농가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처음 낙농진흥회 업무추진상황'이란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았으나 낙농진흥회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후에 운영하여야 할 사업을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목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낙농 산업이 유지 발전되기 위하여는 현재까지의 형태와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와 유제품도 축산물시대를 지나 축산식품으로서 소비자가 품질위주로 선택하는 시대에 와 있고 모든 낙농제품의 수입이 자유롭게 되어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까지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는 과거에는 년간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90년대에 와서는 2~3% 수준이었고 금년에는 10%이상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앞으로 2~3년간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소·상·정 협의체 구성, 각종 소비홍보 실시, 북한 분유보내기 운동전개, 분유수출준비, 젖소송이지 수매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실시하여 우유체화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저능력우 도태와 자조금 조성에 의한 소비홍보대책 등 우리 낙농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수급안정이 되길 바라면서 낙농진흥회에서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황

- 가. 낙농가 규모가 영세하여 가족단위 전업 전문 낙농가의 육성이 시급함.

표1. 젖소 50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수 (97. 12)

구 분	'86	'91	'95	'97	'97/'91(%)
사육농가수 (호)	516	610	1,325	2,331	382
총사육두수비율	10.8	10.9	17.7	31.1	285

* 젖소사육두수의 경산우 비율은 55%로 본다면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평균두수는 97년말에 72두로서 경산우 두수는 40두로 추정된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와서 규모화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95년 대비 '97년의 2년간에 호당 50두 이상규모가 175%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노동단위의 전업, 전문경영을 위하여 경산우 40~50두가 필요하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육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경산우두수가 현재 31% 수준에서 50~70% 수준이 되어야 원유생산 기반이 안정되고 건실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 낙농산업과 우유특성에 따른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희망하는 우유가공장에 판매하고 우유가공장은 필요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가 태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자기 우유공장에 판매하도록 하는 현상은 일부 낙농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당연한 경제원리에 맞는 상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73년의 우유체화가 시작된 이래 7번째의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25년간에 12년간은 원유의 과잉생산현상을 보여왔으며 결국 1년은 우유가 모자라고 1년은 우유가 남는 상황속에서 낙농가와 우유가공장에 원유집유 기피와 원유쟁탈현상이 수없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또한 원유를 집유하는 주체가 61개소(한 주체가 태도에 집유하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93개소)와 우유가공장 49개소가 자율적인 집유와 원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유집유와 검사에 대한 질서가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의 체제로서는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낙농가와 우유가공장 관계자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총회는 축협중앙회, 낙농관련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법 제5조), 이사회는 낙농가, 낙농조합, 유가공업체, 학계 및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업 내용은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낙농진흥회 직원은 총 30명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별지회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생각되는 원유의 세균수와 체세포수가 같이 1등급에 해당되는 원유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기를 바라며 93개소의 원유집유주체가 집유를 계속하여도 집유경제성과 원유의 품질향상에 영향이 없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본다.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가 우유의 특성상 일반 농산물과 다른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라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표2. 원유집유실태조사결과 (97. 12)

구 분	농가수(호)	1일집유량(톤)	호당집유량(Kg)	kg당 집유비용(원)
최 저	20	5.5	200	18
최 고	4,318	1,410	559	85
평 균	367	120	339	41

* 전국 45개 원유 집유주체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내용임.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조사항목을 보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며 1개 시군에 2개업체 이상이 집유하는 경우는 80%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원유검사비는 검사주체에 따라서 원유 kg당 2~14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우유제품이 '95년과 '96년에 수입자유화되었으나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우유제품의 수입자유가 되면서 관세를 높은 수준으

표3. 원유의 생산과 우유제품 소비동향 (단위: 톤 %)

구 분	비수기(11~3월)		성수기(4~10월)	
	전 체	1일평균	전 체	1일 평균
원유생산(A)	780,750	5,195	1,115,470	5,212
시유소비(B)	659,461	4,388	1,030,208	4,814
시유소비(B/A)	84.5%		92.4%	
전체제품소비율	106%		116%	

* 1. 원유생산과 우유제품소비는 '91년에서 '97년까지의 평균이며 전체소비가 100% 이상인 것은 수입제품의 소비결과임.

2. 요구르트와 가공시유 등에는 수입혼합분유가 많이 사용됨.

로 협상 함으로써 분유 등 일부제품의 수입이 어려울 수가 있고 어느 제품이 과다하게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혼합분유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판결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으로 겨울에는 반드시 분유 등 가공품이 체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기인 겨울에도 원유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으므로 잘못하면 낙농산업의 위축이 초래되는 현상이 오고 우리나라의 낙농여건상 마시는 시유 산업만이라도 발전시켜야 함으로 수입제품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시유 외의 가공품 산업을 유지하면서 시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낙농산업 40년에 되었으나 제도마련 미흡

낙농산업의 특성과 원유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1976년, 1987년, 1991년에 낙농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997년 7월에서야 전면 개정되었다. 현재의 IMF 체제하에서 우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낙농인 모두의 노력으로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기 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마. 낙농산업의 발전과 수급안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관리와

낙농분야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낙농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1999년 1월에서야 낙농진흥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 현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낙농진흥회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여 나갈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낙농진흥회의 주요업무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낙농진흥회의 주요 업무내용

(1) 기획관련 업무

-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 유제품의 수매·비축·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 낙농산업과 관련된 제도 마련

(2) 사업관련 업무

- 원유의 계약생산, 원유의 구입 및 원유계약 공급 (법 제9조~12조)
- 원유의 구입가격 결정(법 제9조) 및 판매가격 결정·(법 제12조)
 - 판매가격은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
-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권역 설정 (법 제13조)
 - 원유집유일원화와 관리·조정
- 낙농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과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원유계약생산에서부터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설정 업무는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음.

3. 낙농진흥회는 어떠한 조직인가 ?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사단 법인으로서 총회는 축협중앙회, 낙농관련단체인 한국

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법 제5조), 이사회는 낙농가, 낙농조합, 유가공업체, 학계 및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업 내용은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낙농진흥회 직원은 총 30명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 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별지회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낙농진흥회에서는 기획, 관리, 구조개선 방안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원유집유조합에 위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도 농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농림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유업체)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원유유통질서,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및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을 감독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농림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이행 사항을 검사할 수도 있도록 낙농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17조)

따라서 일부 낙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 '농림부는 낙농진흥회에 모든 사업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을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는 농림부라는 것을 낙농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우유수급과 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사업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업무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민간 중심으로 결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러한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1997년도에 개정된 낙농진흥법은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 보조기관으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은 낙농진흥회가 설립될 때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낙농진흥회 정관, 낙농진흥회 운영을 위한 규정, 원유집유조합 지정과 운영, 원유계약

생산제의 기본원칙 제정, 원유집유일원방법과 시행, 원유가격결정과 원유 실수요자에 판매할 가격결정 및 낙농산업의 발전과제에 대한 방향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98년 11월까지는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후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낙농관련제도를 마련하고자 1976년, 1987년, 1991년에 시도하였으며 1997년에서야 낙농가와 관련단체 등의 노력으로 낙농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금은 낙농인 모두가 낙농 40년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제까지 노력하여 놓은 이 터전을 지키고 우리의 직업인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성장시키기 위하여는 다시한번 힘을 합쳐 새로운 제도하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게끔 낙농인 모두가 협조하고 이끌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앞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낙농진흥회의 운영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 낙농진흥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법인이나 낙농진흥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간기구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의 운영은 부여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감독하에 각 도, 각도기축위생시험소,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조합 및 집유조합, 우유가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모든 낙농가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하며 주요한 업무사항은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흥회는 원유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첨작하여 원유판매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유일원화가 실행되면 원유 kg당 집유비용이 10원 수준 내외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절감금액 중에서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집유일원화율이 80% 수준이상이 되어야 집유비용의 절감 등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초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5. 사업추진방향

가. 원유와 우유제품의 수급계획수립

농림부에서는 낙농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낙농진흥회에서는 매년 사업개시년도 1개월전까지 원유와 우유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 계획내용에는 원유생산량 및 우유제품 소비량, 원유실수요자인 우유가공업체에 대한 공급계획과 원유 및 우유제품의 수급안정에 대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일부의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우유제품소비는 성수기(4~10월)와 비수기(11~3월)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의 사업년도인 1월에서 12월보다는 년중 분유재고의 최저시점이 10월인 점과 양곡년도가 11월부터 시작되듯이 우유사업년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로 조정·시행함으로써 사전에 우유제품의 비수기에 정상 이상으로 과잉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수급안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또한 앞으로의 수급예측은 어려운 과제이나 원유생산 및 우유제품소비에 대한 예측모델을 최근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시험연습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장기 예측까지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예측업무는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차이를 보일수가 있어 처음에는 신뢰도가 낮을것으로 예상되나 수급예측의 정확성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우유제품소비는
성수기(4~10월)와 비수기(11~3월)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의 사업년도인
1월에서 12월보다는 년중 분유재고의
최저시점이 10월인 점과 양곡년도가
11월부터 시작되듯이 우유사업년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로 조정·시행함으로써
사전에 우유제품의 비수기에 정상 이상으로
과잉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수급안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나. 원유생산기반의 확보

낙농가수는 1997년말 통계에 의하면 17천농가 수준으로 젖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333호, 평균 경산우 두수는 40두로 이 비율은 전체 사육두수의 31% 수준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경산우 40두 이상을 사육하여야 전업·전문적인 낙농경영이 가능하며 젖소의 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 경영의 합리화, 원유의 질 향상 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물론 소규모 농가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가능하나 규모의 한계로 대부분 합리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낙농가의 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산우 40~50두 규모 농가에서 사육되는 비율이 50~70%는 되어야 낙농산업이 안정되고 국가기간 산업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낙농가는 증가될 것이나 2000년대의 우유제품수급과 관련하여 낙농가의 유지 및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대책은 더 좋은 우유 생산과 우유제품의 품질 경쟁 또는 가격경쟁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소비기반의 확보차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낙농산업은 원유의 생산가액이 1조 2천

억원에 달하며 우유제품의 유통가격으로는 3조원이 넘고 있고 낙농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95천명 이상, 국토의 20%를 이용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며 농촌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낙농진흥회만으로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준비하여 모든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유의 계약생산 구입 및 계약판매제 시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 마련 없이 자유경제 원리에 의하여 발전하다보니 우유수급의 부족과 과잉이 격년간격으로 진행되어 왔고 원유의 집유생탈과 기피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낙농진흥회가 발족되면 원유의 계약생산 구입 및 계약판매제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낙농가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자체에 대하여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생산과 수급 안정 및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낙농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계약을 하고 계약량보다 많이 생산하면 생산을 줄이던가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원유생산계약 및 계약판매제는 낙농진흥회에서는 원유집유조합과 원유생산자인 낙농가 및 원유수요자인 우유가공업체간에 실행하도록 위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량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는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여 계약을 하게될 것으로 본다.

특히 상한선, 하한선을 어느정도로 정하느냐 하는 것과 원유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얼마나 생산하는 농가까지를 적용하는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앞으로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될 것으로 본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지난 5월에 1997년도 납유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신규시설, 초기확보 농가등을 참고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피해지역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제도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낙농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본다.

라. 원유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

원유집유실태를 도별로 보면 집유주체가 93개소이고 집유비는 kg당 18~85원이며 주체당 집유량은 1일 5.5~1400톤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더 좋은 원유의 생산도 한계에 있으며 원유의 유통질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입 자유화 된 상태에서 품질경쟁도 어려운 실정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유주체 93개소, 우유가공주체 49개소로는 품질관리와 낙농가의 원유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기술정보제공,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낙농진흥법의 법 취지에 따라 도별로 집유조합을 1개소로 지정하고 여러개의 조합이 있는 지역은 지정된 조합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으며 낙농진흥회에서는 지정된 집유조합에 원유의 생산계약 및 원유의 판매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유조합에서 낙농가와 연계한 경영 및 기술 등의 종합 정보제공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원유 및 원유등급 검사는 각도 도지사에게 위임될 것이나 현장 검사는 집유조합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 업무는 낙농진흥회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원유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는 낙농산업의 특성상 기본적인 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행되므로 이제까지 찬성과 반대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제는 낙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고 원유유통질

서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더 좋은 원유생산과 우유제품 생산은 쉽지가 않으며 품질경쟁도 불가능하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 원유 및 우유제품 수급안정과 관련제도 마련
수급과 가격안정은 관련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유 및 우유제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는 앞서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유제품 사업년도 조정, 수급의 중장기 예측, 수급계획의 정확한 판단, 원유의 계약생산 및 계약공급제와 낙농산업의 기본이 되는 원유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도 중요한 사항들이며 다음에는 수급 및 가격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유 계절별 차등가격제로서 비수기(11~3월)에는 원유가격을 5개월간 인하하고 성수기(4~10월)에는 비수기에 인하한 금액에 해당금액만큼 7개월간에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비수기에 원유 생산량을 줄이므로서 분유 등 체화량을 줄이고 분유 등 생산가격을 낮추어 수입되는 제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낙농가와 우유가공업체에는 손실없이 수급과 가격 및 계절별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방법은 시행할 필요는 인정하나 낙농가의 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대부분 낙농인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원유계약생산초과량과 시유를 제외한 분유 등의 유제품을 제조한 원유에 대하여는 비수기와 성수기에 관계없이 원유생산비 이하로 가격을 정하여 수입유제품과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우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 낙농가의 영세성과 새로 시작되는 다른 제도의 정착이전에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일부 낙농인들의 주장도 있으나 전반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조상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유계약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량에 대하여는 시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원유수요자인 유가공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체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분유 등 유제품의 수매 또는 비축자금 지원방법으로 분유비축자금은 현재에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수매사업은 낙농진흥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수매사업에는 수매 자체의 자금 뿐 아니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의 자금문제가 수반됨으로써 신설되는 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려면 정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비한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수매에 필요한 자금축적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정부, 산업계, 금융계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낙농분야에서도 원유생산에서부터 우유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실행되지 않는다면 낙농산업의 유지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알아보면

첫째 더좋은 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의 환경개선과 경영합리화에 적합한 규모 및 전업, 전문 낙농가로서의 변화이며

둘째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과 실천으로 건실한 집유조합과 우유가공장의 육성이며

셋째는 품질이 좋은 우유제품의 생산공급으로 소비자가 우리 생产业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품의 유통체계도 서민이 쌈값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발전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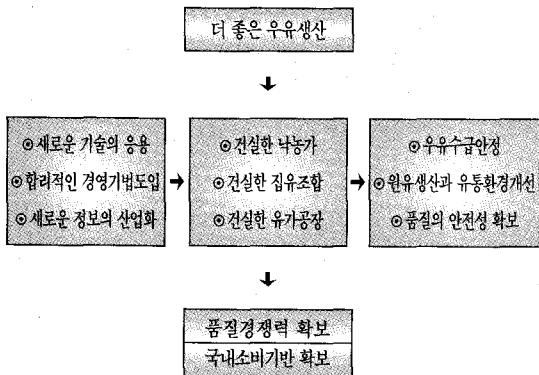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발전방향

가. 기본 방향

나. 낙농산업의 발전 전략

▶ 우유수급 모델 개발과 수급안정 방법 강구

7. 맷는 말



- ▶ 산업화 기술 및 종합 정보의 보급체계 구축
- ▶ 더 좋은 우유생산 위한 프로그램 마련
- ▶ 생산, 가공까지의 단계별 구조조정 실행
 -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조기 정착
- ▶ 젖소 분뇨 자원화와 조사료 기반 확보

위에서 낙농진흥회의 운영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알 아보았으나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실 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 및 실천 프로그램 마련, 인력 및 조직의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낙농진흥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모든 낙농인과 관련단체, 기관에서 다같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현재의 견디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중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낙농가 여러분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예상하여 적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의 낙농가 및 낙농인 모두의 바램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맷을까 한다. ☺

〈필자연락처 : 02-573-7822〉

알리는 말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심껏 게재를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